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23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송달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O준	75.1.17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 (종료) 조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일자에 미방문 및 출석통지 2회 불응 (연락두절)	①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②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 지원 신청 제한(3년간 재참여 제한)	수취인 불명	경북 구미시 형곡로 22길 5-10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6. 23. ~ 2026. 7. 7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구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전애경(Tel. 054-440-334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